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6. 5. 1.

행정재무위원회

1. 審查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6년 4월 1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6년 4월 2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

가. 제안이유

-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동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도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 도모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제2조의 제5호 신설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전문위원 : 허영훈)

동조례 개정내용은 동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교부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도 처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조 제5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내무부 주민 13210-122('96. 2.23)호에 의한 주민등록업무개선계획과 서울시행정13210-278('96. 2.24)호로 개선업무 지침으로 시달된 바 있으며, 현재 민원인의 주민등록지 확인을 위한 첨부 서류로 주로 활동되는 주민등록표의 등·초본 교부나 열람을 동장뿐만 아니라 구청장도 처리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도모할 뿐아니라 민원의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해서도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審查結果缺課 : 원안의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 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55
----------	----

발의(제출)년월일 : 1996.

발의(제출)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도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도 모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제2조의 제5호 신설

3. 개정근거

- 내무부 지침 (주민 13210 - 122 <'96. 2.23>)
- 서울시 지침 (행정 13210 - 278 <'96. 2.24>)

4. 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 : 별도 필요없음

첨부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. 끝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 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,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2조(권한의 위임)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.	제2조(권한의 위임) (현행과 같음)
1. 법 제17조의 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	1. (현행과 같음)
2.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	2. (현행과 같음)
3. (삭제, '95. 9. 15)	3. (현행과 같음)
4.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(신설)	4. (현행과 같음) <u>5.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·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</u>